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384호

법무부고시 제2023-333호

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제33조 제4항에 따른 「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7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「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」
일부개정고시**

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현금”을 “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수수료의 납부 등) ① 영 제 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 별표2에 따라 <u>현금</u>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	<p>제2조(수수료의 납부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현금이나 신용카드 드·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법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